

#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2. 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11월 07일, 정부

나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0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0회국회(임시회)

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 01. 10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 
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01. 16) 상정, 축조심사,  
의결(원안가결)

제421회국회(임시회)

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5. 01. 21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  
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정부 제출)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(안 제1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건오)

#### 가. 개정안 요지

- 출판사 경영을 위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시장 등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.(안 제9조)

#### 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신고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조(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제>               |
|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| <삭제>               |
| ④·⑤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·⑤ (현행과 같음)       |

#### 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

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 등”)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,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이를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<sup>1)</sup>하도록 하고 있음.

- 개정안은 적법한 출판업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없어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- 현행 출판업 신고사항은 출판사의 이름·소재지, 경영자의 성명·주소 등<sup>2)</sup>으로서,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의 심사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신고절차를 완화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.
- 참고로, 개정안은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‘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, 출판업 외에도 인쇄업·영화업·비디오물제작업·음반업 등

---

1) 동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.

2) 「인쇄문화산업 진흥법」 제9조(신고)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[경영자(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]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

2. 경영자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의 성명 및 주소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(이하 “신고”라 한다)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)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, 해당  
영업 신고를 기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<sup>3)</sup>  
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음.

<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 법령정비 계획(신고절차 완화)>

| 연번 | 법령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비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계량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량기 수입업 신고·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       |
| 2  | 수산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구생산업·어구판매업 신고·변경신고·폐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|
| 3  |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|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        |
| 4  |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화업, 비디오물제작업 등 신고·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|
| 6  |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반·음악영상물제작업 등 신고·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 |
| 7  |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쇄사 신고·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           |
| 8  |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판사 신고·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           |
| 9  | 축산법 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        |
| 9  |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로 전환           |

3) ‘자기완결적 신고’는 신고 자체가 행정기관에 도달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이며,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‘행위요건적 신고’(수리를 요하는 신고)는 관계법상 행정청에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신고로서,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함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박정하 소위원장)

원안가결

6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7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

※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:

1.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 호

##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판사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9조(신고) ①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조(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   |
| ② <u>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</u><br><u>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</u><br><u>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</u><br><u>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&lt;삭    제&gt;</u> |
| ③ <u>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</u><br><u>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</u><br><u>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</u><br><u>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</u><br><u>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</u><br><u>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</u><br><u>리한 것으로 본다.</u> | <u>&lt;삭    제&gt;</u> |
| ④ · ⑤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|